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1624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김인식

변론 종결 2020. 5. 26

판결선 고 2020. 6. 2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2254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와 함께 식당업을 영위하는 동업관계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C이 종전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20,962,1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C와 함께 식당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금전 청구의 소송물은 청구원인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종전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2016나66858(본소), 2016나66865(반소)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의 동업자로서'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선행 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740,906원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8. 25.부터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연 15%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현판사 김창현판사 김용한